

## 9. 建設業界 懇談會 開催

### ○ 간담회 개요

- 일시 : '91. 6. 21(금) 16:00
- 장소 : 건설회관 3층 회의실
- 참석 : 건설부 : 건설경제국장 및 관계 과장

협 회 : 상임임원 각 1명

업 계 : 일반건설업체 : 10명

전문건설업체 : 10명

설비공사업체 : 6명

### ○ 간담회 내용

- 건설부 당부사항
  - 새질서, 새생활운동 실천
  - 건설공사현장 관리철저
  - 여성인력 활용제고
- 공지사항
  - 건설기능공 사기진작 방안
  - 군보충역 활용방안
  - 북방관련업무 처리지침 교육계획
- 업계 애로 및 건의

## 업계 애로 및 건의

제 목	건의 내용
1. 건설경기 진정대책에 따른 의견	
가. 자금난 해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택상환사채 발행대상 확대</li> <li>○ 공영개발 주택대금 납부기간 연장</li> </ul>
나. 주택건설기간 연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분양개시일로부터 10개월, 10층 초과시 1층마다 45일을 가산(15층 기준 17.5개월)하고 있는 주택건설기간을 분양계약일로부터 14개월, 10층 초과시 1층마다 60일을 가산토록 연장 요망(인력, 자재확보난으로 공기내 준공불가)</li> </ul>
다. 시공중 공사의 중단 또는 연기에 따른 간접비 보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공중인 공공개발공사의 공기연장으로 간접노무비, 일반관리비 등 각종 간접비 부담의 추가발생에 따른 실비 보상 요망(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3조)</li> </ul>
2. 주요 건설자재 수급 안정 대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요자재 수급안정을 위해 5·3건설경기 진정대책추진과 시멘트, 철근 수입확대 등 다각적인 건설자재 원활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, 시중에는 아직도 레미콘 등 주요 자재의 공급부족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바, 건설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.</li> </ul>

제 목	건의 내용
3. 부대입찰제 의무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행 건설업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대입찰제도를 일정규모 이상(예, 10억원 이상 공사)의 공사에 대하여는 의무화하여 하도급계열화 촉진, 전문건설업자의 경쟁능력제고, 원·하도급자간에 대등한 지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.</li> </ul>
4. 건설업 발전 대책 기구를 구성하여 조속한 제도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부관련부처와 건설기관단체로 구성된 건설업발전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건설업의 당면 과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건설관련제도의 연구·발전</li> </ul>
5. 해외건설업 면허기준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사업자도 해외건설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현행 면허기준 개선 요망</li> </ul>
6. 주택난방설비공사 일원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건설업법 규정에 의한 설비공사업자가 주택난방설비공사를 시공할 경우 연탄 및 기름용 보일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시공업지정을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관된 시공관리가 가능하도록 건설업법령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 개정요망</li> </ul>